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비조합원 대출한도 우대(안 제16조의2)

가. 제ㆍ개정 이유

○ 그간 소극적·채권자 중심 금융공급으로 적정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었던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에 도입된 중금리 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신협으로 확대함으로써 신협이 적극적으로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

나. 제ㆍ개정 내용

- 현행 신협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한도는 신규 대출의 1/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
-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협 조합원에 대한 대출 중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대출(중금리대출)은 그 대출의 150%로 확대 인점함으로써 서민의 금융부담 완하를 도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 판매 확대를 통해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없음

2. 금융감독원장의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건전성 감독권한 근거 마련(안 제24조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○ 현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는 감독원장이 조합 및 중앙회의 경영 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

나. 제ㆍ개정 내용

○ 금융위원회가 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에 '조합 및 중앙회의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의 건전성 감독'을 추가하여 감독원장의 해당 감독권한을 명화화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불명확한 근거 보완을 통한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없음